

제41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0. 9. .  
제출자 : 이 천 시 장

##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문 및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제5조·제6조·제8조·제10조 및 제14조).

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을 완화함

○ 감량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호)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간을 7일에서 30일이내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에 위해한 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이행완료신고서 제출기간을 개선기간 만료 즉시에서 7일이내로 완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조항중 정비함(안 제10조).

다.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분함량기준을 강화함

○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건조 방법으로 처리할 때 종전에는 75퍼센트미만에서 앞으로는 25퍼센트미만으로 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처리할 때 종전에는 수분함량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중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및 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라.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폐기물과”를 “쓰레기와”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별표 4 제5호의 가목”을 “별표 4 제3호의 라목”으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호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를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로, “날짜”를 “일시”로 한다.

제6조본분중 “, 법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1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조제2항중 “법 제63조제2항제2호”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행 또는 개선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기간만료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이행 또는 개선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자원화하는 시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건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용법	부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차위반	차위반	차위반	3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현장 계도 현장 계도	5 5 10 10	10 20 20 2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계획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명령 이행 명령	20 50 10 20	50 100 30 30	10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관련)	100	200	300	500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kg/일		kg/월	kg/월		
자기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주소·전화	
	kg/월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장 귀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자기재활용						
위탁재활용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별지 제4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이행      완료신고서 <input type="checkbox"/> 개선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사업장소재지	
⑥조치명령 및 기간		⑦이행완료일자
⑧조치명령내용		⑨이행(개선)완료내용
<p>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을 이행(개선)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p> <p>이 천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 이행 및 개선 전·후사진 각 1매		수수료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1. ----- ----- -----쓰레기와----- -----.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u>별표 4 제5호의 가목</u> 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2. ----- ----- -----별표 4 제3호의 라목----- -----.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및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및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 -----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 -----.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u>감량화</u> 또는 <u>자원화</u>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1.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

현 행	개 정 안
<p>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 에 배출하여야 함</p> <p>2. (생략)</p> <p>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 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 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 <u>15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 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종 사 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 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 용하여야 함</p> <p>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 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 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함</p>	<p>-----일시-----</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 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p> <p>-----</p> <p>-----</p> <p>----- &lt;삭 제&gt;</p> <p>-----</p> <p>-----</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 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 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 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 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 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 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 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p>

현 행	개 정 안
<p>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p> <p>&lt;신설&gt;</p>	<p>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 ----- -----.</p>
<p>2. (생략)</p>	<p>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생략)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u>별 제63조제2항 제2호</u>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현행과 같음) ②----- ----- ----- <u>별 제63조제3항 제2호</u>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행 또는 개선할 사항을</p>

현 행	개 정 안
<p>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 또는 개선기간 만료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이행 또는 개선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 ⑤(생략)</p>	<p>④ ~ ⑤(현행과 같음)</p>
<p>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법 제12조-----</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 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p>	<p>③시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p>

현 행	개 정 안
<p>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 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p>	<p>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lt;신설&gt;</p>	<p>&lt;삭제&gt;</p> <p>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lt;삭제&gt;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생략) ②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령·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p> <p>[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내용별첨)</p> <p>[별지 제1호서식] (서식내용별첨)</p> <p>&lt;신설&gt;</p>
	<p>[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내용별첨)</p> <p>[별지 제1호서식] (서식내용별첨)</p> <p>[별지 제4호서식] (서식내용별첨)</p>

## 신·구조문대비표(현행)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회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용법 폐기물 관리법	부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계획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관련)	200	300	500

##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건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항목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u>현장</u> <u>계도</u>	5 5	10 10	2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계획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u>의행</u> <u>명령</u>	20 10	50 20	10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관련)	<u>100</u>	<u>200</u>	<u>300</u>	<u>500</u>

## 신·구조문대비표(현행)

[별지 제1호서식]

<u>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u>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월	kg/월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장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월	kg/월			
자기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주소·전화		
	kg/월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유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장 귀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자기재활용							
위탁재활용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input type="checkbox"/> <u>이행</u>	<u>완료신고서</u>	처리기간
		<u>5일</u>

신 고 인	<u>①상호(명 청)</u>		
	<u>②성명(대표자)</u>	<u>③주민등록번호</u>	
	<u>④주 소</u>		
<u>⑤사업장소재지</u>			
<u>⑥조치명령 및 기간</u>	<u>⑦이행완료일자</u>		
<u>⑧조치명령내용</u>		<u>⑨이행(개선)완료내용</u>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을 이행(개선)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이행 및 개선 전·후사진 각 1매	수수료
	없음